

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연구주체의 장이 연구활동종사자의 부상·질병·사망 등 생명 및 정신상·신체상의 손해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도록 함(안 제26조제1항).

II. 검토의견

- 개정안에 대하여 체계와 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.

(전문위원 박 혜 진)